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4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송재봉 · 허성무 · 박홍근
임호선 · 강준현 · 황명선
이재관 · 이주희 · 이광희
이훈기 · 김우영 · 이수진
이용선 · 박정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FTA 체결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고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FTA 활용 상담 · 컨설팅 · 교육 · 홍보 · 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그런데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 기관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가 원활히 정착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에서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의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 지속가능성 ·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

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효과적인 지원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상협정”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 그 밖에 무역·통상에 관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적 조약 또는 협정을 말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통상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협정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3.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무역거래자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통상협정”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 그 밖에 무역·통상에 관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적 조약 또는 협정을 말한다.
<u><신설></u>	제8조의3(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통상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협정

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한 교육 지원

3.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중견기업
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
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무
역거래자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 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

	<u>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u> <u>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u> ⑥ <u>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u> <u>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운영</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	--